#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제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76

발의연월일: 2020. 6. 30.

발 의 자:장제원·홍문표·정동만

추경호・이철규・김석기

박덕흠 • 윤창현 • 지성호

조태용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 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.

이에 시·도 또는 대도시에서 지역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거나 대기질 개선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고, 이 경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대기오염관리에 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4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##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·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.

제81조제1항제3호 중 "제16조제5항"을 "제16조제6항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설정·변경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 내에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재설 정하여야 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배출허용기준) ① ~ ③	제16조(배출허용기준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④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
	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
	준을 설정·변경하는 경우에는
	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
	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
	듣고 반영해야 한다.
<u>④</u> ~ <u>⑥</u> (생 략)	<u>⑤</u> ~ <u>⑦</u> (현행 제4항부터 제6
	항까지와 같음)
제81조(재정적・기술적 지원) ①	제81조(재정적・기술적 지원) ①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	
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	
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	
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	
한 재정적・기술적 지원을 할	
수 있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<u>제16조제5항</u> 에 따른 특별대	3. <u>제16조제6항</u>
책지역에서의 엄격한 배출허	
용기준과 특별배출허용기준	
의 준수 확보에 필요한 사업	
3의2. ~ 7. (생 략)	3의2. ~ 7. (현행과 같음)

②・③ (생 략)

②・③ (현행과 같음)